

의안번호	2201102
의 퇴 인	김선민 의원
회 답 일	2024. 7. 11.
추 계 번호	24C0848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유족연금 지급률을 상향조정하고 중복급여 수급권자가 유족연금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의 적용률을 조정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4,038억원(연평균 808억원)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억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유족연금 지급률 상향 (안 제74조)	476	566	673	801	952	3,469	694
중복급여 수급권자의 유족연금 미선택 시 적용률 조정(안 제56조)	123	118	113	110	106	570	114
추가재정소요	599	684	787	910	1,059	4,038	808

주: 합계는 단수 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56조(중복 급여의 조정)	유족연금과 다른 급여에 대하여 중복 수급권 발생 시, 유족연금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선택한 급여 전액과 유족연금액의 50%를 함께 지급 ※ (현행) 유족연금을 선택하지 않는 경우, 선택한 급여 전액과 유족연금액의 30%를 함께 지급	의무규정
2	안 제74조(유족 연금액)	유족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50~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등 지급(가입기간을 1년 단위로 세분화) ※ (현행) 유족연금액은 가입기간에 따라 기본연금액의 40~60%에 해당하는 금액을 차등 지급(가입기간은 10년 단위로 세분화)	의무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 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56조(중복급여의 조정)	○	○ 2021~2023년 실적치 추세를 적용하여 추계
2	안 제74조(유족연금액)	○	○ 2021~2023년 실적치 추세를 적용하여 추계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개정안 부칙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 2025년부터 신규 유족연금 수급권 발생자 및 유족연금과 타 급여 중복급여 발생자에게 개정법 적용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가. 유족연금액 조정(안 제74조)

- 개정안에 따라 유족연금 지급률이 상향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추가재정소요는 개정안에 따른 유족연금 지급률이 유지되는 경우 발생할 유족연금 총 재정소요에서 현행 유족연금 지급률이 유지되는 경우 발생할 유족연금 총 재정소요를 차감하여 산출
 - － 유족연금의 총 재정소요 = 유족연금 수급자 수 × 월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별 지급률 × 12개월

[표 2] 개정안에 따른 유족연금 지급률 변화

구 분	가입기간											
	10년 미만	10년 이상 11년 미만	11년 이상 12년 미만	12년 이상 13년 미만	13년 이상 14년 미만	14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16년 미만	16년 이상 17년 미만	17년 이상 18년 미만	18년 이상 19년 미만	19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현행	40%	50%										60%
개정안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0%

주: 유족연금 지급률이란 기본연금액에 적용하는 일정 비율을 가리킴

자료: 현행법 및 개정안을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가입기간별 유족연금 대상자 수 및 기본연금액 단가는 2023년 수치를 기준으로 2021~2023년의 연평균 증가율에 따라 변동한다고 가정
- 이때, 추가재정소요 추정 시 안 제56조의 추가재정소요 추정과의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수급자 중 ‘중복급여가 발생하여 유족연금을 미선택한 사람’은 제외하고 산출

[표 3] 유족연금 신규 수급자 수 추이

(단위: 명, %)

구 분	가입기간												
	10년 미만		10년 이상 11년 미만	11년 이상 12년 미만	12년 이상 13년 미만	13년 이상 14년 미만	14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16년 미만	16년 이상 17년 미만	17년 이상 18년 미만	18년 이상 19년 미만	19년 이상 20년 미만	20년 이상
2021	19,694	19,062	3,728	2,488	2,103	1,988	1,742	1,709	1,594	1,313	1,252	1,145	8,532
2022	22,578	21,871	4,552	2,821	2,473	2,403	2,017	1,755	1,655	1,553	1,376	1,266	9,958
2023	25,371	25,190	5,248	3,273	2,955	2,575	2,237	2,079	1,921	1,861	1,578	1,463	11,371
연평균 증가율	13.5	15.0	18.6	14.7	18.5	13.8	13.3	10.3	9.8	19.1	12.3	13.0	15.4

주: 신규 수급자 중 중복급여가 발생하여 유족연금을 미선택한 자는 제외

자료: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표 4] 유족연금 신규 수급자의 기본연금액(월) 추이

(단위: 천원, %)

구 분	가입기간												
	10년 미만		10년 이상	11년 이상	12년 이상	13년 이상	14년 이상	15년 이상	16년 이상	17년 이상	18년 이상	19년 이상	20년 이상
			11년 미만	12년 미만	13년 미만	14년 미만	15년 미만	16년 미만	17년 미만	18년 미만	19년 미만	20년 미만	
2021	738	801	780	828	803	798	820	799	793	802	808	791	1,070
2022	784	857	830	874	852	855	852	861	860	870	895	867	1,132
2023	806	877	849	889	871	876	885	878	883	892	900	889	1,192
연평균 증가율	4.5	4.6	4.3	3.6	4.2	4.8	3.9	4.8	5.5	5.5	5.5	6.0	5.5

주: 신규 수급자 중 중복급여가 발생하여 유족연금을 미선택한 자는 제외

자료: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재작성

□ 유족연금액 지급률 상향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476억원, 2029년 952억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3,469억원(연평균 694억원)으로 추계됨

[표 5] 유족연금액 지급률 상향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억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현행(A)	4,749	5,717	6,884	8,293	9,995	35,638	7,128
개정안(B)	5,226	6,283	7,557	9,094	10,947	39,107	7,821
추가재정소요(B-A)	476	566	673	801	952	3,469	694

주: 합계는 단수 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나. 중복급여 수급권자의 유족연금 미선택 시 적용률 조정(안 제56조)

□ 개정안에 따라 중복급여 발생 시 유족연금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유족연금 지급률(이하 ‘유족연금 적용률¹⁾’)이 상향될 경우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음

- 개정안은 유족연금과 중복급여 발생 시 유족연금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선택한 급여 전액과 유족연금의 50%를 합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
 - － 현재 유족연금과 중복급여 발생 시 유족연금을 선택하지 않은 경우, 선택한 급여 전액과 유족연금의 30%를 합산하여 지급
- 추가재정소요는 개정안에 따른 유족연금 적용률이 유지되는 경우 발생할 중복급여 수급권자의 유족연금 지급에 따른 총 재정소요에서 현행 유족연금 적용률이 유지되는 경우 발생할 중복급여 수급권자의 유족연금 지급에 따른 총 재정소요를 차감하여 산출
 - － 중복급여 수급권자의 유족연금 지급에 따른 총 재정소요 = 중복수급권자 중 유족연금 미선택자 수 × 월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별 지급률 × 가입기간별 적용률 × 12개월
 - － 개정안에 따른 유족연금액(월 기본연금액 × 가입기간별 지급률)은 안 제74조의 가입기간별 지급률을 적용한 금액을 활용

□ 중복급여 수급권자 중 유족급여 미선택자 수 및 해당 사람들의 유족연금에 대한 기본연금액 단가는 2023년 수치를 기준으로 2021~2023년의 연평균 증가율에 따라 변동한다고 가정

1) 본 추계서에서는 유족연금 산정시 기본연금액의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것을 ‘유족연금 지급률’로(유족연금액 = 기본연금액 × 유족연금 지급률), 중복급여 발생 시 유족연금을 선택하지 않았을 때 유족연금의 일정 비율을 적용하는 것을 ‘유족연금 적용률’로 지칭함(중복급여 중 유족연금 미선택 시 유족연금 수급액 = 유족연금액 × 유족연금 적용률)

[표 6] 연도별 신규 중복급여 발생자 중 유족급여 미선택자 수 추이

(단위: 명, %)

구 분	가입기간												
	10년 미만		10년 이상	11년 이상	12년 이상	13년 이상	14년 이상	15년 이상	16년 이상	17년 이상	18년 이상	19년 이상	20년 이상
			11년 미만	12년 미만	13년 미만	14년 미만	15년 미만	16년 미만	17년 미만	18년 미만	19년 미만	20년 미만	
2021	7,969	7,068	1,983	857	808	735	614	502	478	438	355	298	962
2022	9,170	9,092	2,575	1,141	945	889	722	666	638	578	521	417	1,316
2023	5,693	6,283	2,038	766	614	602	502	487	404	321	306	243	772
연평균 증가율	-15.5	-5.7	1.4	-5.5	-12.8	-9.5	-9.6	-1.5	-8.1	-14.4	-7.2	-9.7	-10.4

주: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복발생, 장애연금과 유족연금 중복발생 시 유족연금을 선택하지 않은 사람의 수를 가리킴

자료: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표 7] 연도별 신규 중복급여 발생자 중 유족급여 미선택자의 미선택급여(유족연금)에 대한 기본연금액(월) 추이

(단위: 천원, %)

구 분	가입기간												
	10년 미만		10년 이상	11년 이상	12년 이상	13년 이상	14년 이상	15년 이상	16년 이상	17년 이상	18년 이상	19년 이상	20년 이상
			11년 미만	12년 미만	13년 미만	14년 미만	15년 미만	16년 미만	17년 미만	18년 미만	19년 미만	20년 미만	
2021	612	630	592	622	623	619	644	651	663	682	675	697	849
2022	639	659	625	652	656	666	672	671	669	686	704	726	880
2023	720	699	656	708	700	710	713	737	724	721	750	761	927
연평균 증가율	8.5	5.4	5.3	6.7	6.1	7.2	5.2	6.4	4.5	2.8	5.4	4.5	4.5

자료: 국민연금공단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제작성

□ 중복급여 수급권자의 유족연금 미선택 시 적용률 조정에 따른 추가재정 소요는 2025년 123억원, 2029년 106억원 등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간 총 570억원(연평균 114억원)으로 추계됨

[표 8] 중복급여 수급권자의 유족연금 미선택 시 적용률 조정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억원)

구 분	2025	2026	2027	2028	2029	합 계	연평균
현행(A)	142	138	134	131	128	673	135
개정안(B)	265	255	247	240	234	1,242	248
추가재정소요(B-A)	123	118	113	110	106	570	114

주: 합계는 단수 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국회예산정책처

IV. 부대의견

☐ 없음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김우림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김우림	02-6788-3738	wrkim@assembly.go.kr